

# 학생회 회칙



중앙대학교 간호대학

# 1장 총칙

## 제1조 (명칭)

본회는 중앙대학교 간호대학생회라 한다. (이하 본회)

## 제2조 (목적)

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과 창조적 비판적 학문 연구를 통하여 교시인 '의와 참'의 정신을 계승, 발전시키고 회원의 민주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여 대학 문화를 고양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3조 (회원)

본회의 회원은 본교 간호대학 재학생으로 한다.

## 제4조 (회원의 권리)

- 1)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- 2)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.
- 3) 회원은 각 선거직 임원이 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탄핵할 수 있다.
- 4) 회원은 본회의 회원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.

## 제5조 (회원의 의무)

- 1) 회원은 대학 자치와 본회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수호해 나갈 의무가 있다.
- 2)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입하여야한다.

## 제6조 (자문 위원회)

- 1) 본회는 학생 자치활동에 관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- 2) 자문 위원회는 계열 부총장 및 각 학부(과) 교수 평의회에서 선출된 평교수 1인으로 구성한다.
- 3) 자문 위원회는 학생 권익에 해당하는 학교 행정에 대해 학생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

## 제7조 (구성)

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총회, 간호대학생대표자회의, 간호대학운영위원회, 집행위원회, 간호대학 동아리 연합회로 구성한다.

## 제8조 (특별기구)

- 1) 본회는 활동상 필요한 경우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.
- 2) 특별기구는 간호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간호대학생회장이 구성한다.

# 2장 간호대학생총회

## 제9조 (지위)

간호대학생총회(이하 학생총회)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.

## 제10조 (구성)

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한다.

### **제11조 (권한)**

- 1) 학생총회는 회원 전체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, 결정한다.
- 2) 학생총회는 간호대학생회장, 간호대학학생회장(이하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)의 탄핵 결정권을 가진다.

### **제12조 (의장)**

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.

### **제13조 (소집)**

- 1) 학생총회는 간호대운영위원회 및 간호대학생대표자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6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, 소집하고자 하는 일자 7일 이전에 학생회장이 공고하며,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.
- 2)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학생회장이 학생총회를 독자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### **제14조 (의결)**

- 1)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1/8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회고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을 결의한다.
- 2)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의 불신임 결정에 관한 학생총회는 간호대학생대표자회의나 간호대학운영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진행 아래,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회고 참석 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3) 총회를 할 수 없을 시에는 총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.

## **3장 총투표**

### **제15조 (정의)**

총투표라 함은 본회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안건에 대한 의사를 투표로 묻는 방식이다.

### **제16조 (권한 및 목적)**

- 1) 본회의 목적은 본회의 모든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실현화하는 것이다.
- 2) 총투표의 권한은 본회의 모든 회원의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것이다. 회칙 안의 모든 의결 방식이나 단체보다 우선시 된다.

### **제17조 (투표관리 위원회 정의 및 구성)**

- 1) 투표관리 위원회 정의는 총투표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. 총투표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 지는 조직이며 총투표와 관련된 업무 종료 시 자동으로 해체된다.
- 2) 투표관리 위원회의 구성원은 간호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. 간호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간호대학생회 회칙 6장에 따른다.

### **제18조 (진행 방식)**

- 1) 투표의 진행방식은 간호대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을 따른다. 또한 새롭게 투표를 진행 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오면 아래의 투표관리 위원회에서 그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.
- 2) 투표의 안건은 투표하기 최소 7일 전에 투표관리 위원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. 7일에 주말을 산정한다.
- 3) 투표의 기간은 3일로 하며 투표율이 과반(전체유권자의 절반)을 넘지 못한 경우에는 투표관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1회에 한해 2일을 연장 할 수 있다.
- 4) 총투표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총투표의 안건에 대해서 공지하고 총투표의 게시물을 만들어 학우들에게 알려야 한다.

### **제19조 (예산 및 감사)**

- 1) 총투표의 예산은 학생회비로 집행한다.

- 2) 투표관리 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된 날을 기점으로 10일 내에 심의회를 열어 결산안을 공개해야 한다.
- 3) 투표관리위원장은 심의회 5일 전에 의회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4) 심의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개된 회의이며, 투표관리 위원이 아닌 회원은 발언권을 신청하여 의결을 통해 발언할 수 있다. (발언권 신청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.)
- 5) 본회 회원의 1/8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, 결산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해명문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.

## 제20조 (결과의 공고)

- 1) 총투표가 완료되면 총투표의 결과를 1일 이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.
- 2) 총투표가 성사 되었을 시 결과에 따른 후속결과도 30일 이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.

# 4장 간호대학생대표자회의

## 제21조 (지위)

간호대학생대표자회의(이하 간학대회)는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.

## 제22조 (구성)

- 1) 간호대학생회장, 부학생회장
- 2) 반대표, 동아리 연합 회장 (단, 부대표 및 동아리 연합 부회장이 있는 경우 포함)
- 3)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단위 회원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 (단, 간학대회 개의 1시간 전까지 위임장을 통한 의장의 확인을 필한 위임자에 한한다.)
- 4) 집행위원회를 구성에 포함시키되, 재적단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.

## 제23조 (의장)

- 1)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대외적으로 간학대회를 대표한다.
- 2) 본 회의의 진행은 부학생회장이 맡는다.
- 3)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의 유고 및 결위 시 개회 시작 직후 의결을 통해 집행위원회 인원이 진행을 맡을 수 있다.

## 제24조 (소집)

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.

- 1)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의장이 소집한다.
- 2) 임시회의는 재적 대표자 1/4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간호대학운영위원회의 발의 시 의장이 소집하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.
- 3) 의장은 대회 5일 이전에 대회를 공고하여야 한다.

## 제25조 (업무)

- 1) 본회 활동의 총 노선 및 주요 사업 승인
- 2) 본회 예, 결산의 심의 및 의결
- 3)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
- 4) 본회의 회계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
- 5) 본회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의 탄핵 발의
- 6) 집행부서의 신설, 폐지 및 집행간부의 소화 및 탄핵 결정
- 7) 학칙 개정의 건의
- 8) 기타 간학대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

## 제26조 (권한)

- 1)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간호대학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
- 2) 간호대학생총회 소집 요구

## 제27조 (안건 상정)

- 1) 의장 또는 간호대학운영위원회는 3일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.
- 2) 재적 대표자 1/5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- 3) 회원 4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
## 제28조 (의결)

- 1) 재적 대표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.
- 2) 제 25조 5항의 경우 1/3 이상의 발의와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3) 토론 및 의결에 관해서는 대회 시행 세칙을 둔다.

# 5장 간호대학생회장, 부학생회장

## 제29조 (임무 및 권한)

- 1) 학생회장은 간호대학생회를 대표하여 학생총회의 의장, 간호대학생대표자회의 의장, 간호대학운영위원회 위원장, 집행위원회 의장이 된다.
- 2) 학생회장은 본회 및 회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간호대학장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.
- 3) 학생회장은 예산의 집행, 각 집행위원장, 차장의 임명 및 파면, 간학대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.
- 4) 학생회장은 기타 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5)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.
- 6)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.

## 제30조 (임기)

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당선 연도 12월 1일로부터 다음해 11월 30일을 원칙으로 한다. (단, 다음해 선거가 성사되지 못할 시 이전 간호대학생회장은 다음 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첫 소집을 할 수 있다.)

## 제31조 (선출)

- 1)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은 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- 2)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이 동시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 각각의 권한대행을 간호대학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- 3) 전항의 경우는 간학대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4)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 모두의 유고 및 사퇴 시 잔여 임기가 100일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
## 제33조 (신분 보장)

총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는다.

# 6장 간호대학운영위원회

## 제34조 (위치)

간호대학운영위원회(이하 간운위)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.

### 제35조 (구성)

- 1) 간운위는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, 반대표,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. (단, 부대표 및 동아리연합부회장이 있는 경우 포함)
- 2) 간운위의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.

### 제36조 (업무 및 권한)

간운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- 1) 간학대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수임
- 2) 학생회비의 심의 조정
- 3) 본회 제반 사업 계획안의 심의 조정
- 4) 본회 예산안 심의 조정
- 5) 본회 결산안 심의 조정
- 6) 집행국 업무 집행의 조정
- 7) 본회의 회칙 개정 발의
- 8) 간학대회 소집 요구와 본회의 회원에 대한 중대한 문제의 심의
- 9) 간학대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 의결

### 제37조 (소집)

- 1) 정기회의는 매주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간운위에서 정한다.
- 2) 임시회의는 학생회장이 요구 또는 간호대학운영위원 1/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3) 방학 기간 중 회의는 위원장이 임의로 정한다.

### 제38조 (의결)

간운위는 재적단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7장 반대표자, 반 부대표자

### 제39조 (임무 및 권한)

- 1) 반대표자는 학년별 각 반을 대표하여 간호대 총투표 투표관리위원회 위원, 간호대학운영위원회 운영위원, 간호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.
- 2) 반대표자에게는 간학대회, 간운위에서 학년별 각 반당 하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. (단, 임시 대표자의 경우 발언권만 부여되고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.)
- 3) 반대표자는 학년별 각 반의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. (단, 재정을 포함한 필요한 업무는 학년별 각 반 실정에 맞게 반대표자에 의하여 결정된다.)
- 4) 부대표자는 반대표자를 보좌하며 반대표자의 유고 및 결위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.
- 5) 부대표자는 반대표자가 위임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.

### 제40조 (임기)

반대표자와 부대표자의 임기는 선거 해당 학기 18주차 시작일에 시작하여 다음 학기 17주차 말일 날까지로 한다. (단, 1학년 1학기의 경우 반대표자 선거 시행 세칙의 부칙의 제4조 2항을 따른다.)

### 제41조 (선출)

- 1) 반대표자, 부대표자는 학년별 각 반의 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- 2) 반대표자, 부대표자가 동시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 대행 여부와 대행자 선출 방식에 대해

간호대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.

3)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호대학 반대표자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.

## 8장 간호대학 동아리 연합회

### 제42조 (구성)

본회의 회원으로만 구성된 모든 동아리의 회원으로 한다.

### 제43조 (간호대학 동아리연합회장단)

1) 동아리 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선거권을 가진 정동아리 회원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
2) 동아리 연합회장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.

### 제44조 (활동)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## 9장 집행위원회

### 제45조 (위치)

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.

### 제46조 (구성)

집행위원회는 당 해 연도 학생회장이 임명하여 간운위에서 인준하며 각 집행위원장, 집행국장, 차장으로 구성한다. (단, 집행위원장 직책의 필요 여부는 당해 학생회장이 결정한다.)

### 제47조 (임기)

집행위원회의 임기는 당 해 연도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.

### 제48조 (업무 및 권한)

- 1) 사업 및 예산의 집행
- 2) 본회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편성, 결산서 작성
- 3) 기타 집행위원회의 업무

### 제49조 (부서 및 기능)

집행위원회에는 제반 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 부서를 두고 그에 맞는 기능을 관장한다.

## 10장 재정

### 제50조 (회계 연도)

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말일까지로 한다.

### 제51조 (회비)

- 1) 본회의 회비는 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간학대회에서 확정된다.
- 2) 본회의 회비는 입학한 첫 해에 총 4년의 회비를 일괄 납부한다.
- 3) 본회의 회비 사용에 관한 회계 업무는 본회에서 담당하고 그 인출 및 집행은 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행한다.
- 4) 회계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위원회 내에 이를 담당하는 부서인 사무국을 두며, 이는 사무국장이 관리한다.
- 5) 집행위원회는 회비의 운용에 있어 반드시 장부에 기록토록하며, 영수증이나 명세서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회비의 사용처, 사용금액 등을 상세히 명시토록 한다.
- 6) 중도 납부 시 (1인당 총 회비\*해당 연도를 포함한 남은 학년 수/4)를 납부한다.
- 7) 전과, 자퇴 등의 사유로 인해 본회 활동에 참여가 어려울 시에는 (1인당 총 회비\*해당 연도를 제외한 남은 학년 수/4)를 환불한다. (단, 전과, 자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집행부 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)

## 제52조 (예산 편성, 심의 확정)

집행위원회에서 예산안을 각 기구별, 시기별 사업 계획별로 편성하고 간운위의 심의조정을 거쳐 정기 간학대회 때 의결한다.

## 제53조 (감사)

- 1) 본회의 모든 회원은 회계 내역을 상시 열람할 수 있다.
- 2) 간운위는 제 52조에 명시된 회계 감사 관련 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3) 간운위는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간운위 재적 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4) 간운위 감사 결과 학생회비 횡령 및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실무 책임자와 예산을 집행한 자가 공동 책임을 진다. 다만, 손괴의 경우 책임자의 과실에 비하여 책임 비용이 과중하다고 간운위가 판단할 시 간학대회에서 비용 분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- 5) 감사에 필요한 서류 또는 내용은 간운위에서 결정한다.

# 11장 선거

## 제54조 (피선거자격)

- 1) 학생회장은 본회 회원으로 4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, 부학생회장은 2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
- 2)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이 한 단위로 선거에 출마
- 3) 회원 15%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(단, 각 반 별도로 각각 정원의 15% 이상.)

## 제55조 (선거 시기)

- 1)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 선거는 임기 연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한다. (단,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.)
- 2)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선거직 임원은 각각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.

## 제56조 (선거관리위원회)

- 1)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간호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선관위)를 둔다.
- 2) 선관위는 간호대학운영위원회 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학생회장이 선관위원장, 부학생회장이 부위원장이 된다. (단, 필요시 선관위에서 추천된 1인이 의결을 통해 선관위 위원장이 된다. 단, 공석이 되기 전 학생회장 혹은 부 학생회장이 의결을 진행한다.)
- 3) 선관위는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의 선거일을 늦어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.
- 4) 선관위는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간호대학생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 결정한다.
- 5) 선관위는 선관위가 구성된 후부터 간호대학생회장단 당선 확정 공고 전까지 간호대학생회의 직무를 대신한다.
- 6) 선거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장단과 집행위원회의 사업 진행, 의견 표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7) 간호대학생회장단과 집행위원회의 특정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선관위는 해당 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
8) 선거에 의한 이의제기는 개표일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.

### **제57조 (선거시행세칙)**

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간호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.

### **제58조 (임기)**

- 1)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5장 30조의 임기를 따른다.
- 2) 반대표 및 반부대표의 임기는 매학기 18주차 시작일로부터 다음 학기 17주차 말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
- 3) 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동아리연합회칙을 따른다.

## **12장 회칙 개정**

### **제59조 (발의)**

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.

- 1) 간호대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표자 1/5이상의 발의
- 2) 간호대학운영위원회의 발의
- 3) 회원총수의 1/15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발의

### **제60조 (의결)**

회칙 개정이 발의 시 간학대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,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에 간학대회를 열고 재적 대표자 과 반수 출석과 출석대표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**제61조 (공포)**

간학대회 의장은 의결 3일 이내에 공포한다.

## **13장 비상대책위원회**

### **제62조 (정의)**

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대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마련된 매년 정기적인 선거기간에 선거가 무산 되어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 간운위에 준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.

### **제63조 (구성)**

구성원은 간호대학 학생회칙 35조(간호대학운영위원회 구성)에 준하여 같이 구성되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구성원에서 제외한다.

### **제64조 (업무 및 권한)**

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대학 학생회칙 36조(간호대학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)에 언급된 간운위와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.

### **제65조 (소집과 의결)**

간호대학 학생회칙 제37조와 제38조(간호대학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)와 같은 소집과 의결 절차를 거친다.

## 14장 비상대책위원장

### 제66조 (정의)

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들의 투표로 뽑혀진 위원회의 대표이다.

### 제67조 (업무 및 권한)

간호대학 학생회칙 제29조(학생회장, 부학생회장 임무 및 권한)에 의거하여 그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. 하지만 그 임무와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 할 수 없고,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임무와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.

### 제68조 (선출)

- 1)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비상대책위원들 중 4학기 이상을 필한 한명으로 구성된다.
- 2) 다른 비상대책위원들의 추천으로 후보를 선출하고, 2인 이상의 다수의 후보가 나온 경우 제일 많은 표를 득표한 사람이 위원장으로 선출된다. (단, 제일 많은 득표를 한 후의 득표수가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인원수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. 넘지 못할 경우 재투표를 시행한다.)
- 3)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.

## 15장 비상대책위원회 재정

### 제69조 (회계 연도)

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학생회 당선 다음날까지로 한다.

### 제70조 (회비)

- 1) 본회의 회비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간학대회에서 확정된다.
- 2) 본회의 회비는 입학한 첫 해에 총 4년의 회비를 일괄 납부한다.
- 3) 본회의 회비 사용에 관한 회계업무는 본회에서 담당하고 그 인출 및 집행은 비상대책위원장의 결재에 의하여 행한다.
- 4) 회계 업무와 관련하여 부비상대책위원장이 담당하며, 이를 관리한다.
- 5) 비상대책위원회는 회비의 운용에 있어 반드시 장부에 기록토록하며, 영수증이나 명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회비의 사용처, 사용금액 등을 상세히 명시토록 한다.
- 6) 중도 납부 시(1인당 총 회비\*해당 연도를 포함한 남은 학년 수/4)를 납부한다.
- 7) 전과, 자퇴 등의 사유로 인해 본회 활동에 참여가 어려울 시에는 (1인당 총 회비\*해당 연도를 제외한 남은 학년 수/4)를 환불한다. (단, 전과, 자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)

### 제71조 (감사)

- 1) 다음 학생회가 당선이 될 경우 해당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당선된 학기의 간학대회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의 회계감사를 시행해야한다.
- 2) 다음 학생회가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, 다음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전 비상대책위원회가 사퇴한 연도까지 회계감사를 시행해야한다.
- 3) 회계감사 결과 학생회비 횡령 및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실무 책임자와 예산을 집행한 자가 공동 책임을 진다. 다만, 손괴의 경우 책임자의 과실에 비하여 책임 비용이 과중하다고 회계주체가 판단할 시 간학대회에서 비용 분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
### 제72조 (회계감사 소집)

- 1) 회계 감사의 주체는 15장 70조를 따른다.
- 2) 회계 감사는 시행일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3) 회계 감사의 공표는 감사 시행일 다음날로 한다.

## 부칙

### 제1조 (발표)

본 회칙은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### 제2조
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간운위의 의결에 따른다.

### 제3조 (개정)

- 1) 본 개정회칙은 2016년 06월 02일 개정하여 2016년 06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- 2) 본 개정회칙은 2017년 04월 04일 개정하여 2017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- 3) 본 개정회칙은 2018년 04월 03일 개정하여 2018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- 4) 본 개정회칙은 2018년 10월 02일 개정하여 2018년 10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- 5) 본 개정회칙은 2019년 06월 05일 개정하여 2019년 06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- 6) 본 개정회칙은 2019년 10월 04일 개정하여 2019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- 7) 본 개정회칙은 2020년 06월 02일 개정하여 2020년 06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- 8) 본 개정회칙은 2020년 09월 22일 개정하여 2020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제4조 (특수 상황)

- 1) 특수 상황이라 함은 감염병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원의 집합 또는 대면 형태로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.
- 2) 특수 상황에는 간운위의 의결을 통해 회칙에 제약받지 않고 결정을 할 수 있다.
- 3) 전항의 경우, 회원에게 온라인을 통해 해당 조항과 의결과정을 포함한 회의록을 기재하여 1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.
- 4) 결정사항과 관련된 공지에 대해 60인 이상의 이의 제기 또는 해명 요구가 있을 시, 7일 이내에 해명문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.